

대전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148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148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합10261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용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서

변론종결 2024. 3. 13.

판결선고 2024. 4. 2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합10261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8. 7. 12. 체결한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연대채무계약을 750,299,87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81,097,7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0, 12행과 제8쪽 끝 행의 각 '76,314,267원'을 모두 '76,307,467원'으로, 제6쪽 제12, 18행의 각 '750,306,673원'을 모두 '750,299,873원'으로 각 고치고(원고의 당심에서의 취소 대상 금액 정정에 따른 것이다),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원고가 D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시점인 2018. 7. 12.에는 이 사건 연대채무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나아가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석봉, 판사 이흥주, 판사 모성준